2024학년도 1학기 취득성적 포기 안내

1. 관련 근거

가. 학칙 제43조(취득성적의 포기)

나. 학사운영규정 제103조(취득성적의 포기)

2. 취득성적의 포기

이미 취득한 교과목의 성적이 C+등급 이하의 경우 성적을 포기할 수 있는 제도로서,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초과 예정인 경우

3. 신청기간 : ~ 2024. 03. 13. 18:00 까지

4. 신청대상자 : 재학생

5. 취득성적 포기신청: 졸업까지 총 12학점 이내에서 포기신청 할 수 있으며 취득 성적을 포기한 교과목의 성적은 다시 인정받을 수 없음

6. 주의사항

가. 교필 및 전필 교과목은 취득성적 포기 불가

나. 취득성적을 포기한 교과목의 성적은 다시 인정받을 수 없음

7. 신청방법(☏ 043-830-8584, ＭＩ 411호)

홈페이지 학사공지 - 취득성적 포기원 및 서약서 서식 출력 → 작성 → 성적증명서 첨부 → 학과장 면담 및 날인 → 학생원스톱센터로 원본 제출